

-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

I. 최근 확진자 발생 현황

- (발생 현황) '20.8.20. 현재 248명 발생, 특히 8.10~16일 7일간 39명 확진자 급증(1일 평균 5.6명)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 17~20일 35명 발생 ▶ 전국 16,346명(8.20. 0시 기준), 국외 2,201만 명 이상 발생

구 분	합계	2~7월	소계	8월(169번~248번 환자)											
				8.1~8.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합 계	248	168	80	6	9	5	2	4	4	7	8	7	7	14	7
지역감염	199	121	78	6	9	4	2	4	4	6	8	7	7	14	7
해외유입	49	47	2	-	-	1	-	-	-	1	-	-	-	-	-

- (8월 확진자 발생) 80명 중 지역감염이 78명으로 항만, 학교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확산 추세(지난 1주일 코로나19 재생산지수 평균 1.5로 수치 급증), 특히 경로를 알 수 없고 감염원이 불분명한 확진 사례 등 동시다발적 발생

- (병상 현황) 82명 확진자 입원 중 ⇒ 부산의료원 58병상 추가 확보(8.23.까지)
(20.8.20. 현재)

병상 수			사용 중			이용가능 병상			비고
소계	부산의료원	상급병원*	소계	부산의료원	상급병원	소계	부산의료원	상급병원	
146	105	41	82	66	16	64	39	25	

* (상급종합병원^{5개소}) 부산대병원, 부산백병원, 해운대백병원, 고신대병원, 동아대병원

II. 2단계 격상 후 조치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 (주요경과) 내부검토(8.15~16) ⇒ 구·군 영상회의(13:30) ⇒ 중대본 보고(15:00) ⇒ 긴급 브리핑(권한대행, 16:30) 및 보도자료 배포 ⇒ 재난본부장 명의 공문 발송(8.16.)

- (기간) 8.17. 12시 ~ 8.31.(2주간) (지역) 부산광역시 전체
- (내용) 고위험시설 등 점검강화, 공공시설 등 방역강화, 학교 원격수업 전환,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공공기관 등 근무밀집도 완화 조치 등
- (조치) 관련 기관·단체 등에 공지(안내) 및 공문 발송 등(8.16~8.17.)

주요 조치사항

- ◇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 * 특별점검기간 연장(~8.31), PC방·결혼식장 뷔페 추가, 확진 발생시 구상권 청구 등
 - **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점검강화 : 종교시설,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 높은 시설
- ◇ **공공시설 방역 강화(50% 수준 이용객 제한, 비대면), 복지시설 휴관 권고**
- ◇ **학교 등 원격수업 전환(8.18~21), 학원 휴원 권고(~8.23.)**
- ◇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진행(8.17~, 야구·축구 등)**
- ◇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강화(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 **공공기관 근무밀집도 완화(시차출퇴근제 운영 등) 및 민간기업 참여 권고**
- ◇ **고위험시설(12종) 이행상황 표본점검(감사위원회 및 특별사법경찰과 합동, 8.18.~8.19.)**
- ◇ **병상 가동상황 점검 및 확대 추진(부산의료원, 부산대병원 등)**

□ 고위험시설 등 방역협조 간담회 개최

- (시기) 8.19.(수) (대상) 고위험시설 12종 및 **위험도 높은 중위험시설***

*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장례식장, 오락실, 멀티방, DVD방 등

- (내용) 거리두기 2단계 추진상황, 수도권 방역강화 및 방역협조 요청 등

□ 거리두기 2단계 시민참여 활성화 추진

- (단체방문) 8.18.~ 8.20, 시 산하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 등 범시민운동 전개
 - 집합·모임·행사 시 방역수칙 준수, 주요 행사 자제 권고, 주민 의견 청취 등
- (홍보캠페인) 홈페이지, SNS, 언론사 홍보, 지역기업 시차출퇴근제 동참 등

Ⅲ. 행정명령 발령사항 ▶ 4건

□ 선박 출입자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 행정명령

- (기간) 8.19. 12시 ~ 별도 해제 시까지(8.19.~8.24. 12시까지 계도기간 운영)
- (대상) **방역강화 대상 국가*** 및 러시아에서 출항하여 행정명령 발령 일로부터 부산항 감천항에 입항·정박하는 모든 선박
 - *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 현재 6개국
- (내용) 해당 선박 선주 또는 해운대리점업체 : 전자출입명부 설치·운영·관리 / 해당 선박 모든 출입자 : 전자출입명부 인증

□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 (기간) 8.19. ~ 8.31. (대상) 부산시 관할 지역소재 종교시설
- (내용) 종교시설의 정기적인 모임(예배, 법회, 미사 등) 외 소모임, 식사제공, 수련회 등 대면 행사 금지

□ 광화문 집회 참가자 역학조사 실시에 따른 참가자 정보제공 요청 행정명령

- (기간) 8.20. 18시까지 (대상) 부산시 및 구·군 인솔책임자 등
- (내용) 광화문 집회에 부산시 권역 내 참가자를 인솔한 책임자 등은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 정보제공(성명, 휴대폰 번호 등)

□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 (기간) 8.19. ~ 8.29. (내용)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 진단검사* 이행
*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상태 유지
- (대상) 8.8. 경북궁 인근 집회 및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8.7.~8.13.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IV.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조치

현 상황 진단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8.17. 12시)해 고위험시설 점검강화, 다중이용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등을 강력하게 시행 함에도 불구하고
 - 최근 5일간 확진자가 43명이 발생하고, 특히 19일에는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진자 급증, 시민 불안 확산 및 코로나19 재유행 우려
 - 밀집지역 내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미준수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 여론 다수, 특히 감사위원회의 고위험시설 표본점검 결과 방역 수칙 미준수 사례 다수 발생 ⇒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내에서 방역 강화 조치 필요

- (고위험시설 표본점검) '20.8.18~19, 감사위원회 및 특별사법경찰과 합동, 고위험시설 12종 5,556개소 중 684개소 점검
 - (점검결과) 고위험시설 684개소 중 477개소 위반(70%)
 -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 : 684개소 중 263개소 위반(39%)

①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당초 : 방역수칙 의무화)

○ (대상)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 (기준)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 다만, 공간이 분할되고, 이동·접촉이 불가능한 경우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시험 등은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하에 가능

< 집합금지 대상 사례 >

-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 (행사)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 (예외)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예외 허용, 다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① 법령 등 구속력이 있는 규정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③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④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능한 경우

< 예외 허용 사례 >

- ▲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 ▲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②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및 실내 공공시설 운영 중단**

(당초 : 시설 점검강화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등)

○ (고위험시설) 클럽·노래연습장·뷔페·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 금지(고위험시설 13종 중 유통물류센터 제외)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 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8.19.부터 추가)

○ (실내 국공립시설) 부산시·구군·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③ **중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당초 : 방역수칙 점검)

○ (대상)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12종*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내용)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운영, 거리두기(2m) 준수, 발열체크 철저 등

④ **종교시설 방역조치 강화 방안** (당초 : 현장 점검강화 등)

○ (대상) 부산시 관할 지역소재 종교시설

○ (내용) 교회의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는 비대면 방식의 정규예배만 허용하고, 다른 종교시설의 경우 소모임·식사제공·수련회 등의 대면모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 실시 * 8.19일부터 기초치 시행 중

⑤ **해수욕장 조기 폐장** (당초 : 해수욕장 집합제한(마스크 착용, 야간취식 금지))

○ (시행) 8.21.(금) 0시 (대상) 지역 내 해수욕장 7개소*

* 해운대·송정(해운대), 광안리(수영), 송도(서), 다대포(사하), 일광·임랑(기장)

○ (내용) 해수욕장 물놀이 편의시설 운영 종료*,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속 시행**(~8.31.), 방역관리 강화(집합제한명령 연장 고시***) 등

* 파라솔·피서용품 대여소 철거, 샤워·탈의장·간이화장실 등 철거

** 안전관리요원 운영(수상구조대 등), 허용시간 외 입수금지 조치(입수객 단속 강화)

*** (당초) 8.31. ⇒ (연장) 9.30. / (내용) 마스크 미착용 단속(상시) 및 취식제한 단속(야간)

V. 향후 조치계획

○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 긴급브리핑 실시 : 8.20.(목) 15시(권한대행)

○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 시행 : 8.21.(금) 0시부터 8.31.(월) 24시까지

○ 집합·모임·행사 및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종교시설 집합제한 등 일괄 행정명령 조치(시민안전실) : 8.20.(목)

- 동 행정명령에 의거, 소관 시설별로 구·군, 협회·단체, 국공립시설 등에 공문 통보(실·국·본부) : 8.20(목)

- 감염 확산 위험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 관련 >

- (3단계 주요 조치) ①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②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 중단, ③ 원격 수업 전환
- (3단계 격상 기준)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00명~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
- ➔ 국민 생활 및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조치임을 고려하여 향후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검토 필요

VI. 구·군 협조사항

-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따른 소관 시설·기관·협회 등에 신속 고지
 - * 산하 공공시설 등에 통보,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명령서 부착 등
-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종교시설 집합제한 등 이행점검 실시, 미이행(법률 위반)시 조치 철저*
 - *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구·군 산하 공공시설 운영 중단 조치
- 해수욕장 조기 폐장 조치(8.21. 0시~, 단, 안전관리 및 방역 강화 철저)
-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시민홍보* 추진
 - * 안전문자 발송, 구·군 홈페이지, SNS, 현수막,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홍보캠페인 전개

-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사항(부산, 8.21.~)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비교표(8.21.~) 1부
3. 부산시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경과 1부
4.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상 주요내용 1부
5. 행정명령 고시문(안) 1부

참고 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사항 (부산, 8.21.~)

구분		조치사항(부산)	
조치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시설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추가)
			○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중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구·군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휴원 및 어린이집 가정보육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교·학원	○ 등교 인원 1/3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8.24~8.31) 고교 2/3, 그 외 학교 1/3 - (9.1~9.11) 전국 모든 학교 2/3(교육부 권고) * 전 지역 원격수업 전환(8.18.~8.21.) ○ 대형학원 운영 중단, 중·소형학원 집합제한	
	종교 시설	○ 교회의 예배와 모임은 비대면 방식의 정규예배만 허용 다른 종교시설은 소모임·식사제공·수련회 등 대면모임 금지	
	기관, 기업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 전 인원의 1/2)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해수욕장	○ 해수욕장 조기 폐장(8.21. 0시)		

참고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비교표 (8.21.~)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3단계	
		서울·경기 강화조치	우리시 조치		
조치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좌 동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행사	무관중 경기	좌 동	경기 중지	
	다중 시설	공공	운영 중단	좌 동	운영 중단
		민간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4㎡당(약1평)당 인원 제한)	좌 동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예: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학교, 유치원, 학원	집단발병 지역 원격 수업(2주간), 이외 지역 등교 인원 1β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등교 인원 1β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대형학원 운영중단, 중·소형 학원 집합제한	원격 수업 또는 휴업	
	어린이집	전체 휴원(서울), 휴원 권고(경기·인천)	9개 이상 구군에서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 발생 시 휴원검토	휴원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좌 동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좌 동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종교시설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대면 모임·행사, 식사 등 금지 행정조치(집합제한)	좌 동		
	기타	타시도 이동자제 권고	해수욕장 조기 폐장 (8.21. 0시)		

참고 3

부산시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경과

□ 조치경과 (8월 이후)

단계	지역	시행 시기
2단계	서울특별시, 경기도	2020년 8월 16일 0시 ~
	부산광역시	2020년 8월 17일 12시 ~
	인천광역시	2020년 8월 19일 0시 ~

□ 세부내용

일자	구분	조치사항	
		수도권	부산광역시
8.16	집합·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스포츠	무관중 경기	무관중경기
	다중시설	(공공) 이용객 50% 제한 (고위험시설) 고위험시설 추가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등	(공공) 이용객 50% 제한 (고위험시설) 고위험시설 추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학교·학원	집단발병 지역 원격수업(2주간)	전 지역 원격수업(1주간) 학원 휴원 권고
	어린이집	-	9개 이상 구군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 발생시 휴원검토
	기관·기업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 및 권고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 및 권고
	기타	타시도 이동자제 권고 서울 종교시설 집합제한 경기 종교시설 집합금지	
8.19	집합·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스포츠	무관중 경기	무관중 경기
	다중시설	(공공) 운영중단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공공) 이용객 50% 제한 (고위험시설) 고위험시설 추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학교·학원	집단발병 지역 원격 수업(2주간), 그외 지역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전지역 원격 수업(1주 우선 시행) 학원 휴원 권고(~8.23.)

	어린이집	-	9개 이상 구군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 발생시 휴원검토
	기관·기업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 및 권고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 및 권고
	기타	※ 19일 0시 이후 인천광역시 추가 타시도 이동자제 권고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대면 모임·행사, 식사 등 금지 행정조치(집합제한)	
8.19 이후	집합·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무관중 경기	무관중 경기
	다중시설	(공공)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 (고위험시설)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공공)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 (고위험시설)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종교시설 집합제한 포함
	학교·학원	집단발병 지속되는 시·구·군 원격수업 전환 그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 2/3 수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대형학원 운영 중단, 중·소형학원 집합제한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미정
	기관·기업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 및 권고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 및 권고
	기타	타시도 이동자제 권고	해수욕장 조기폐장(8.21. 0시), 교회의 예배와 모임은 비대면 방식의 정규예배만 허용 다른 종교시설은 소모임·식사제공·수련회 등 대면모임 금지

참고 4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상 주요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구분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목표	일상적· 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역관리 조화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	
핵심 메시지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조치	집합·모임·행사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다중시설	공공	운영 허용 *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민간	운영 허용 *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당(약1평)당 인원 제한)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예: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 전 인원의 1/3)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 - 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본격 적용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산광역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①고위험시설 ②다중이용시설 ③종교시설 ④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장

1.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1) 처분당사자 : 부산시내 고위험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고위험시설(12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 PC방

2) 처분내용 : 영업중지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부산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8. 21.(금) 00:00 ~ 2020. 8. 31.(월)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1. 00:00부터

2.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1) 처분당사자 : 부산시내 다중이용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다중이용시설(12종)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2) 처분내용 : 상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영업 등을 위한 집합 시 반드시 아래 “7)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할 것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부산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8. 21.(금) 00:00 ~ 2020. 8. 31.(월)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1. 00:00부터

7) 핵심방역수칙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퇴근후 3~4일 쉬기) ■ 방역관리자 지정 ■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인증 - 수기명부 작성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3.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 1) 처분당사자 : 부산시내 종교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종교시설 :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이슬람교 등이 운영하는 시설
- 2) 처분내용 : 교회의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는 비대면방식의 정규예배만 허용하고, 다른 종교시설의 경우 소모임·식사제공수련회 등의 대면모임 금지
-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 4) 처분사유 : 부산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 5) 처분기간 : 2020. 8. 21.(금) 00:00 ~ 2020. 8. 31.(월) 24:00
-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1. 00:00부터

4. 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 1) 처분당사자 : 부산시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 2) 처분내용 : 집합금지
-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 4) 처분사유 : 부산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 5) 처분기간 : 2020. 8. 21.(금) 00:00 ~ 2020. 8. 31.(월) 24:00
-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1. 00:00부터

5.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처분 담당자)

구분	소속	직급	이름	비고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150㎡ 이상) 뷔페(결혼식장뷔페포함)	부산광역시청 보건위생과	지방보건주사	이재현	☎ 888-3372
목욕탕·사우나		지방식품위생주사보	김의곤	☎ 888-3395
콜라텍	부산광역시청 재난대응과	지방행정주사보	정우철	☎ 888-2955
공연장	부산광역시청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사무관	조화진	☎ 888-5048

구분	소속	직급	이름	비고
노래연습장	부산광역시청 영상콘텐츠산업과	지방행정주사보	윤진수	☎ 888-5161
PC방, 오락실		지방행정주사보	김지연	☎ 888-5151
영화관, DVD방		지방행정주사보	최연희	☎ 888-5141
멀티방		지방행정주사보	최연희	☎ 888-5141
		지방행정주사보	김지연	☎ 888-5151
실내집단운동 (격렬한 GX류)	부산광역시청 체육진흥과	지방시설주사	지현경	☎ 888-3455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부산광역시청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신현숙	☎ 888-4757
학원	부산시교육청 교육혁신과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이혜진	☎ 860-0463
	부산광역시청 교육협력과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 888-2004
종교시설	부산광역시청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	김종문	☎ 888-5072
장례식장	부산광역시청 노인복지과	지방시설주사보	김효진	☎ 888-3275
결혼식장	부산광역시청 여성가족과	지방행정주사	성중학	☎ 888-1604

끝.

